「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본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같은 조 제2항의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.

※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

나. 주요내용

❍ 제10조 제목 변경

- (기존)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
- (개정) 생산제품 판매촉진 등

❍ 공정경쟁 저해 및 소비자의 권익 제한이 있는 조문 개정 : 안 제10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,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,

❍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9조에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생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및 수의계약의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한편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‘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’ 및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을

정비하는 것으로,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우선적 구매를 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

❍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유지하면서 경쟁제한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 수의계약 관련 규정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존치하는 것은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